

군산시의회 제 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7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 886호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을 “시설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p>① ~ ② (생략)</p> <p>1. (생략)</p> <p>2. (생략)</p> <p>3. 경제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항만경제국, 건설교통국, 농업기 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u>시설관리</u> <u>사업소 소관</u>에 관한사항</p> <p>나. (생략)</p>	<p>제3조(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경제건설위원회</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 <u>시설관리</u> <u>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u>-----</p> <p>나. (현행과 같음)</p>

군산시의회 제 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7월 30일

군산시 조례 제 887호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항 본문 중 “1할(프로경기는 2.5할)을”을 “10퍼센트를”로 한다.

부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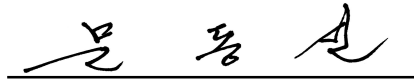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p> <p>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제외하고 관람권 판매수입액의 <u>1할(프로경기는 2.5할)</u>을 더 징수한다. 다만 매표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사용료 미만일 때에는 전용사용료를 징수한다.</p> <p>②(생략)</p> <p>③(생략)</p>	<p>제11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p> <p>① ----- ----- ----- <u>10퍼센트를</u>----- ----- ----- ----- -----.</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7월 30일

군산시 규칙 제 436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군산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의2(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
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
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
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
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2(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자격증소지자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요건(제15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서비스계의 기술분야 자격증을 제외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임용예정계급별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구분표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임용예정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술사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기사 산업기사(3년)	산업기사

(2) 기능직공무원

임용예정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자격증의 등급 및 소요경력	기사(2년) 산업기사(4년)	기사 산업기사(2년) 기능사(4년)	산업기사 기능사(2년)	기능사

나. 임용예정직렬(직류)별 자격증의 종류

- (1)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 및 [별표 2]의 직렬(직류)과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별표 5\]](#)의 직무 분야를 비교하여 상호 관련있는 자격증으로 하되,
- (2) 임용예정직의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자격증이어야 한다.

다. 기타요건

- (1)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특별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이상 임용예정직과 관련 있는 직무분야에서 근무·연구한 경력이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2) 4급이상 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특별임용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 : 10년이상
 - 3급 : 8년이상
 - 4급 : 4년이상
-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4)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 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5)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6) 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특별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행 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운 수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사(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사(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사(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 관리사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교 육 행 정	변호사					

직렬	직류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 (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원 자 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 원자로 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 업	축 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기축인공수정사	
수 의	수 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 (7)	수산질병관리사 (3)	수산질병관리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의사(2) 한의사(2) 치과 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의료기술	의료기술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7)	임상병리사(8) 의무기록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3)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3)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임상심리사2급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2) 한의사(2)				
	치 무		치과의사(2)				
약 무	약 무		약사(7)	약사(3)	약사		
	약 제		한약사(7)	한약사(3)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12) 간호사(12)	조산사(6) 간호사(6)	조산사(3) 간호사(3)	조산사 간호사	
환 경	일반환경		의사(2)	수의사(3)	수의사	위생사(2)	위생사
	수 질		수의사(7)	약사(3)	약사		
	대 기		약사(7)	위생사(8)	위생사(5)		
	폐 기 물		위생사(12)				
항 공	일반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정비사(3) 운항관리사(3)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사업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3)	자가용조종사	

		계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정 비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건 축		건축사(5)	건축사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나.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계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직렬	직류					
전 기	전 기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조명전문인2급	무대조명전문인3급
기 계	기 계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선 박	선 박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소형선박조종사
선박기관	선박기관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보 건	보 건		임상병리사(5) 의무기록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간호사(5) 조산사(5) 영양사(5)	임상병리사(2) 의무기록사(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간호사(2) 조산사(2) 영양사(2)	임상병리사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영양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사(5) 조산사(5)	간호사(2) 조산사(2)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위 생	위 생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2년)
	사 역		영양사(5)	영양사(2)	영양사 조리사 1급(3) 오물처리사1급(3)	조리사 1급 조리사 2급 오물처리사 1급 오물처리사 2급(2)
사무보조	위 드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 3급
	필 기				한글속기 1급 영문속기 1급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이상	한글속기 2·3급 영문속기 2·3급 워드프로세서 2·3급 컴퓨터활용능력3급
	계 리				주산 1급이상 부기 1급	주산 2·3급 부기 2급
	사 서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 제1조의 다목의 「기타요건」은 이 표에도 적용한다.

[별표 14]

겸임 예정직급 기준표(제29조 관련)

임용예정 계급		2 급 · 연구관· 지도관	3 급 · 연구관· 지도관	4 급 · 연구관· 지도관	5 급 · 연구관· 지도관	6 급 · 연구사· 지도사	7 급 · 연구사· 지도사	8 급	9 급
교육공무원	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사립 학교 및 동부설 연구소의 교원 포함)	교수	교수 부교수	부교수 조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2년이상)	전임강사			
	고등학교			24호봉 이상의 교원	16호봉 이상의 교원	12호봉 이상의 교원	11호봉 이하의 교원		
<u>공공기관 및 지방직영기업·지방공 사·지방공단</u>		이사 (3년이상)	이사	부장	과장 (차장)	계장 (대리)	평사원 (3년이상)	평사원	원

[별지 제4호서식]

임용후보자등록원서(원본)

※등록번호		제 회 번		⑥ 응 시 연 도 및 회 수		()년도제 회						
※ 급		직		응시지구(기호) 응 시 번 호		지구	번					
① 성 명 한글 (한문)		② 생 년 월 일 . . . (세)		④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⑤ 희망지역 제1지역 시군						
		③ 주민등록번호				※ 등록심사 사진대조						
						서류심사						
						□□ □□						
⑦ 현 주소		(사진부착)										
⑧ 병 역								필	역종 군별 병과 계급 군번 입대연월일 . . . 제대연월일 . . .			
								미필사유				
⑨ 학 력												
부터	까지	학 력		전공·부문·과목								
⑩ 자 격 면 허				⑪ 상 별								
연 월 일	종 별			연 월 일	사 항							
⑫ 특 기		⑬ 취 미		⑭ 운 동		⑮ 중 교						
⑯ 경 력												
부터	까지	경 력 사 항				발령청						

※

(※ 응시원서 부분 첨부란)

⑰ 재산상황 가. 부동산(㎡) 나. 동 산(원)

⑱ 보증인 또는 후원자

성 명	직 업	현 주 소

⑲ 가족사항

본인과의 관계	성 명	성별	연령	직업	최 종 학 력	비고

첨 부 서 류	가족관계등록부	신원증명원	학력증명서	병적증명서	신원진술서
통 수	통	통	통	통	통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며, 임용후보자로 등록하고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출원합니다.

년 월 일

출원자 (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⑳
우
무
인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각급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로서 공무원에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및 공개경쟁시험합격자는 다음 요령에 따라 등록한다.

1. 등록기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2. 등록장소

시·도, 시·군·구 ○○과

3. 구비서류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

- (1) 임용후보자등록원서(소정용지) 사진부착란에 필히 사진(2매)을 부착할 것
- (2)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2통
- (3) 주민등록부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제1국민역과 실역미필보충역 해당자 및 미수검자, 시·도 병무청 및 시·구·읍·면·동장 발행) 1통
-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사본(인사담당자의 원본대조·확인이 된 것) 1통
- (5) 경력증명서(경력이 있을시) 1통
- (6) 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는 그 사본 1통
- (7) 취업보호대상자는(전물군경의 유족인 경우 대리취업 확인서) 국가보훈처발행 관계증명서 1통
- (8) 민간인신원진술서(소정용지에 사진4매를 완전 부착할 것) 4통
- (9) 공무원전력조사서 1통
- (10)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이상 구비서류를 등록원서 2통과 같이 첨부하여야 하며, 특히 등록원서와 민간인 신원진술서에 사진을 각각 부착한다.

(사진은 응시원서 부착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5매가 소요됨)

나. 공개경쟁승진시험 합격자

임용후보자등록서 2통에 현 근무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인사기록카드 1통만을 첨부한다.

4. 등록원서 제출방법

가. 등록원서는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또는 등기우편으로 우송한다.

나. 등록필증 송부용 봉투(주소 성명을 명기하고 반신용 우표 첨부)를 필히 동봉한다.

5. 원서 기재요령

가. 등록원서는 한글로 작성(워드 또는 펜으로 기재)하되, 한글만으로는 애매한 것은 ()안에 한자를 쓴다.

나. 숫자는 상용 숫자를 사용하되 년월일에 있어서는 1972년 1월 31일을 72. 1. 31과 같이 약기한다.
다. 각란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기재할 것이며 ※란은 기재하지 않는다.

- ① 성 명 … 한글과 한자를 모두 기재한다.
- ② 생 년 월 일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숫자로 기재한다.
- ③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를 기재
- ④ 성 별 … 남·녀 해당 □에 √표를 한다.
- ⑤ 회 망 지 역 … 희망지역은 제1희망, 제2희망으로 구분하여 각각 하나만을 기재한다.
- ⑥ 시험합격구분 … (예) 72년, 제1회 7지구 128번 5급, 행정직 등 기재
- ⑦ 주 소 … 우편물이 송달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를 기재한다.
- ⑧ 병 역 … 미필란에는 연령미달, 영장미교부, 기피, 기피자수후 영장미교부, 징집연기중, 병역 면제처분 기타 사유를 기입한다.
- ⑨ 학 력 … 중학교 이상의 학력만을 기입할 것이며 ○년 졸업, ○년 수료, ○년 중퇴 등 수업 년수를 기입한다.
- ⑩ 자 격, 면 허 … 각종 시험합격, 자격, 면허 등을 종류별로 기입한다.
- ⑪ 상 별 … 수상사항, 공무원 징계처분, 형사상의 처벌 등을 기입한다.
- ⑫ 경 력 … 공무원경력과 사회일반경력을 기입한다.
- ⑬ 재 산 상 황 … 부동산은 가옥·임야·전답 등으로 구분하여 ㎡로, 동산은 금액으로 기입한다.
- ⑭ 가 족 상 황 … 가족명은 한글로 쓰고 직업 및 최종학력을 기입한다.
- ⑮ 우 무 인 … 오른쪽무인(엄지손가락)을 날인한다.

6. 민간인 신원진술서 기재요령

가. 본적을 전직한 사람은 반드시 원적을 기재(신원진술서에 만일 원적란이 없는 경우에는 가본적을 원적으로 정정하고 기재)

나. 본적은 가족관계등록부와 동일하게, 현주소는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소를 통·반까지 명기

다. 가족사항중 남자 기혼자는 처가를, 여자 기혼자는 친가를 미혼자는 미혼으로 기재

라. 보증인은 직계가족이 아닌 자로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배경이 되는 인물)를 기재

마. 8:15이후 거주지 기재에는 기간(년월일), 거주지(번지 및 통·반까지), 당시 호주 및 전거사유를 기재하고, 현재란은 현주소와 동일하여야 하며, 전거사실이 없을 경우 현재 본적·주소를 기재한다.

바. 해당없는 란에는 “해당없음”을 기재한다.

※ 등록이 완료되면 등록필증을 추후 본인에게 송부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8조의2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 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p> <p>1.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시도 단위 이상의 시책으로 채택된 그 시책개발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p> <p>2. 중앙행정기관과 언론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한 전국단위 공개 심사하여 지방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여 수여한 포상을 받은 공무원</p> <p>3.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과 같은 수준의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을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민원처리 우수자로 인정하는 공무원</p>	<p>제28조의2 (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p> <p>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p> <p>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신 설 〉</p>	<p>제31조의2 (격무·기피 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p>

군산시 사업소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본 동 선
2009년 7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50호

군산시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군산시 사업소의 소속과 업무 지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휘·감독) 국장은 별표에서 소속 구분한 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업무에 관하여 지휘·감독한다. 다만,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는 제외한다.

제3조(소속 국의 한계) 사업소의 소속 국은 별표와 같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소 소속구분(제3조 관련)

소속국명	사업소명	비 고
건설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군 산 시 장



2009년 7월 30일

군산시 훈령 제 251호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개정규정

군산시 지방공무원 평정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6급이하 일반직·지도사·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관·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고, 확인자는 해당 국·소장이 되며,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해당국·소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단, 직속부서(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의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해당관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며,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 ①6급 이하 일반직·지도사·기능직 및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관·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고, 확인자는 해당 국·소장이 되며, 5급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4조(근무성적 평정자 및 확인자)①----- ----- ----- ----- ----- ----- 해당국·소장----- ----- 단, 직속부서(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정보통신담당관)의 6급이하 일반직·기능직 및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해당관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이며, 5급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자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확인자는 부시장으로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군산시 고시 제2009-65호

고 시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09. 07. .

군 산 시 장

1. 사업시행지 : 구암동 327-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면적 및 규모

사업명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구암동 장독마을 연계도로 개설	소로 2-794	8	171	8	171.0	1,479	
	소로 3-278	6	89	6	89.5	624	
소 계						2,103	

3. 사업시행자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조촌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4.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 구암동 장독마을 연계도로 개설 : 2009. 8. ~ 2010. 7.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6.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7.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794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구암동	327-2	도	53	6	최승조	군산시 구암동 369			
2	구암동	328-2	도	23	4	전북노회재단	전주읍 동정2정목 18			
3	구암동	327-1	대	615	39	최연봉	군산시 구암동 327-1			
4	구암동	328-4	대	109	109	김병호	군산시 구암동 328			
5	구암동	610	도	11,884	93	건설교통부				
6	구암동	328-3	대	694	43	김재형	군산시 조촌동903-1			
7	구암동	350	대	284	22	김민정	전주시 효자3가1461-8			
8	구암동	349-2	임	1,762	372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9	구암동	349-1	묘	1,431	220	박노희 외 6인	군산시 경암동 641-1			
10	구암동	343	대	228	10	고공식	군산시 구암동 344			
11	구암동	342	대	902	162	송춘례	군산시 구암동 342			
12	구암동	368-5	대	119	119	유태식	군산시 구암동 368			
13	구암동	368-2	대	132	2	전배호	군산시 구암동 638-2			
14	구암동	368-1	대	182	10	송주현 외 2인	이천 부밭음 아미리136-1			
15	구암동	369	대	420	176	이봉운	군산시 구암동 375			
16	구암동	370	대	185	35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17	구암동	371	대	388	57	최금산	군산시 구암동 371			
	합계				1,479					

소로3-27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5	구암동	610	도	11,884	354	건설교통부				
18	구암동	358-2	대	19,569	180	한국서부발전	서울시 삼성동167			
19	구암동	361-2	대	36	2	채수창	인천 구월동 179-101			
20	구암동	361-3	전	380	7	채용석 외 2인	인천 구월동 179-101			
21	구암동	361-5	도	46	4	김원식	군산시 구암동 361-1			
22	구암동	361-7	전	153	8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23	구암동	361-1	대	422	7	심상규	군산시 구암동 384			
24	구암동	362-1	전	2,517	2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5	구암동	362-8	전	3	3	박남용	군산시 구암동 362-7			
26	구암동	357-1	구	3,029	4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27	구암동	355-3	구	4,347	32	전북농조	이리시 평화동 56			
	합계				624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구암동	327-1	건물	스레트	11.6㎡	최연봉	구암동 327-1			
2		328-4	건물	함석	136.3㎡	김병호	구암동 328			
3		328-3	건물	스레트	112.2㎡	김재형	조촌동 903-1			
4		349-2	건물	스레트	78.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5		349-1	건물	스레트	36.0㎡	박노희외6인	경암동 641-1			
6		342	건물	스레트	42.0㎡	송춘례	구암동 342			
7		368-5	건물	스레트 함석	41.6㎡	유태식	구암동 368			
8		368-2	건물	함석	26.6㎡	전배호	구암동 638-2			
9		369	건물	스레트	45.5㎡	이봉운	구암동 375			
10		369	건물	스레트	126.8㎡	이봉운	구암동 375			
11		370	건물	스레트	7.6㎡	채수창	인천시 구월동 179-101			
12		371	건물	스레트	90.3㎡	최금산	구암동 371			
13		361-3	건물	스레트 기와	87.0㎡	채용석외2인	인천시 구월동 179-101			
14		361-7	건물	스레트 슬래브	20.0㎡	유영준	구암동 339			
15			나무	은행나무	1주					
16			나무	감나무	5주					
17			나무	탱자나무	60주					
15			나무	가이즈까	3주					
16			나무	옥향	3주					
17			나무	소나무	2주					
18			한전주		4주					
19			체신주		4주					
20			가로등		2본					

군산시 고시 제2009-66호

낙시어선업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금지구역, 낙시어선업자 의무지정 고시

제 정 2002. 10. 24

개 정 2009. 07. 23

낙시어선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 수질오염방지,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의 의무사항과 낙시어선의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7월 23일
군 산 시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낙시어선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기타 낙시어선업의 질서유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산자원보호 등을 위하여 낙시어선업자 및 승객이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시어선업을 신고한 자 (이하 “낙시어선업자” 라 한다) 및 그 어선과 낙시어선의 승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영업 시간)

가. 하절기(4월 1일 ~ 10월 31일) ⇒ 04:00 ~ 22:00

나. 동절기(11월 1일 ~ 익년 3월31일) ⇒ 04:00 ~ 20:00

다. 선외기를 설치하거나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은 낙시어선, 소형낙시어선(3톤미 만), 선박검사증서에 야간 항해금지 낙시어선 :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

※ 단 레이더 등 야간 항해장비 설치 낙시어선은 가,나,다항에 불구하고 선박검 사증서상 항해기간을 적용한다.

제4조(운항회수) 영업시간내 수시로 운항 할 수 있으며, 출·입항신고 기관에 매회 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하고, 당일 안내한 낙시객은 영업시간내 전원 안 전귀항 조치 하여야한다.

제5조(영업구역 등)

- ① 영업구역은 전라북도지사 관할 수역으로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다음 각호의 해역에서 낚시어선의 승객으로 하여금 낚시어선 선상 및 낚시장소에 안내 하여 낚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군사시설보호법, 해상교통안전법, 원자력법, 항만법, 개항질서법 등 타 법령에 의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
 2. 무인도서, 갯바위, 간출암 등 낚시금지구역이 지정된 곳에 낚시어선의 승객을 안내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영업구역내 낚시금지구역 지정(6개소)

금지구역		소재지	좌표	사유
도서명	위치			
직도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38-00N 126-04-30E	공군 해상사격장
관리도	서방	옥도면 관리도리	35-48-00N 126-22-15E	급경사 절벽,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명도	북방	옥도면 명도리	35-51-00N 126-20-30E	“
흑도	전체	옥도면 관리도리	35-49-30N 126-23-00E	무인도, 파도 등 긴급상황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불가
역경	끝단	옥도면 개야도리	36-02-00N 126-31-00E	“
솔푼서	전체	옥도면 말도리	35-51-30N 126-21-15E	간출암, 파도등 긴급상황 발생시 상황대처 및 대피장소 없음, 구조선박 접근 지난

- ④ 낚시어선의 승객을 도서에 안내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이 당해 낚시장소에서 야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①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선주, 선원의 전화번호 및 승객휴대전화번호 등을 기록하여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를 유지하여 기상악화 등 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 조치하여야 한다.
- ②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 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낚시어선업자는 승객으로 하여금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봉투 및 선내에 이를 버릴 수 있는 휴지통을 비치 하여야 한다.
- ⑤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낚시객 준수사항을 교육 시킨후 출항 하여야 한다.

제7조(승객(낚시객) 준수사항)

- ①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은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식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③ 승객은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후 승선 하여야 한다.
- ④ 승객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시기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3톤미만 소형낚시어선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명동의를 착용 하여야 한다.
 8. 승객은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여야 한다.

제8조(승선정원등의 게시방법) 낚시어선업자가 법제1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낚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낚시승객이 준수 하여야 하는 사항을 게시하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종전의 고시(제2002-718호)에 의해 낚시어선업자에게 행한 본 명령은 본 개정 고시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 표】

낙시어선의 승선정원 및 승객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의 게시방법

1. 게시 방법

가. 재질 : 아크릴 등 변색되지 아니하는 재질

나. 색상

(1) 글씨 : 흑색

(2) 바탕 : 승객정원 - 백색

승객준수사항 - 노란색

(3) 게시판 및 글씨의 크기

당해 낙시어선의 부착장소에 따라 적절한 크기로 조정하되, 누구나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아래의(예시)와 같이 직사각형 형태로 제작

2. 게시장소

당해 낙시어선의 갑판실 외벽 등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

3. 게시문

승선정원 명 (백색)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승객은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안전운항등을 위한 조치

- ① 출항전에 낚시어선을 점검하고 기상상태확인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운항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낚시어선의 선상에서 낚시를 하는 경우 구명동의를 착용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낚시어선업자는 낚시를 하고자 승선하는 승객에 대하여 출항 전에 낚시객 준수사항을 교육 시킨후 출항 하여야 하며, 음주,약물,기타사유로 낚시어선을 운항할수 없을 경우 운항 하여서는 아니된다.

2. 낚시어선업자 준수사항

- ① 낚시장소에 승객을 안내한 때에는 승객과 상호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기상악화등 상황 발생시 승객을 안전하게 대피조치 하여야 한다.
- ② 승객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대피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해양경찰서, 경찰관서, 군부대, 소방서 등에 대피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 ③ 다른 시·군 관할 수역에 승객을 안내하는 경우에는 해당낚시장소(수역·육역)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명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봉투 및 휴지통을 비치 하여야 한다.

3. 낚시승객 준수사항

- ①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양오염방지 등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수산자원보호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포획금지체장(체중) 이하의 수산동식물은 포획 즉시 방류하여야 한다.
- ③ 승선할 어선이 낚시어선업 신고를 필한 어선인지 확인후 승선 하여야 한다.
- ④ 승객은 다음 각목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원을 초과하여 승선을 요구하는 행위
 2. 낚시어선업자의 구명동의 착용시기 및 기타 안전운항을 위한 주의사항 및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
 3. 선내에서 술을 마시거나 기타 선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4. 영업시간외 항행, 영업구역외 지역에 안내를 요구하는 행위
 5. 도서 등에서 쓰레기 투기, 취사, 야생 동식물을 반출하는 행위
 6.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안전대비를 위하여 낚시어선업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7. 낚시중 발생한 쓰레기는 전량 수거하고, 해상에 투기하여서는 아니된다.

4. 출항의 제한

- ① 낚시어선업법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항제한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 -1357호

공 고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전 열람을 실시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009. 7. 21

군 산 시 장

- 1.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 2. 공람장소 :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 3. 실시계획인가 신청요지
 - 가. 사업시행지 : 미룡동 450-7번지 오복마트주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 2) 명 칭 : 미룡동 오복마트주변 연계도로
(소로2-657, 소로1-269, 소로2-658) 개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조서		실시계획			비 고
		폭원	연장	폭원	연장	면적	
도 로	소로 2-657	8	109	8	109	1,692	
도 로	소로 1-269	10	129	10	129	1,036	
도 로	소로 2-658	8	127	8	127	822	
소 계						3,550	

-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1)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8
 - 2)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장)
 -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09. 8. ~ 2010. 7.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4. 관계도서는 열람 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450-44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소로2-657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56-3	전	104	4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2	"	447-2	답	160	11	"	"			
3	"	452-2	답	15	15	"	"			
4	"	455-6	전	1	1	"	"			
5	"	455-5	전	319	97	"	"			
6	"	452-3	답	95	95	"	"			
7	"	452-5	전	786	756	"	"			
8	"	451-1	전	210	199	"	"			
9	"	450-7	전	446	443	"	"			
10	"	450-6	도	63	16	"	"			
11	"	450-3	전	20	18	"	"			
12	"	450-5	도	59	8	"	"			
합계				2,278	1,702					

소로1-269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3	미룡동	453-3	전	373	373	군산시	군산시 시청로 8			
14	"	453-12	도	62	62	"	"			
15	"	416-21	도	107	107	군산시외3인	"			
16	"	416-15	도	301	301	군산시	"			
17	"	416-18	대	82	82	군산시외1인	"			
18	"	416-11	도	111	111	유영준	군산시 구암동 339			
합계				1,036	1,036					

소로2-658

순 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9	미룡동	452-9	전	78	78	고성자외2인	월명동 140-21			
20	"	417-1	전	373	10	이덕례	군산시 나운동 740-11			
21	"	453-5	답	269	269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22	"	416-23	답	334	334	재단법인천주 교전주교구유 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23	"	416-12	답	131	131	박종예순외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합계				1,185	822					

□ 사용 또는 수용할 지장물 조서

순 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면적 또는 수량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관리내용
1	미룡동	416-21	컨테이너		27㎡	김대근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2	"	453-5	"		18㎡	김환기	군산시 미룡동 453-1			
3	"	450-7 451-1	"		150㎡	노동수	경기 화성 마도면 백공리 741-2			
4	"	451-1	감나무	R=15	1주	이인수	군산시 미룡동 450-2			
			대추나무	R=10	2주	"	"			
5	"	417-1	병나무	R=30	1주	"	"			
6	"	416-23	철조망		8m	재단법인천 주교전주교 구유지재단	전주시 완산구 남노송동 78-3			
			단풍나무	R=15	1주	"	"			
			"	R=5	1주	"	"			
7	"	416-23	출입문		5m	"	"			
			웬스	EGI	3m	"	"			
8	"	416-12	천막		0.3㎡	박종예순외 3인	전주시 완산구 교동 67-1			

군산시 공고 제2009-1371호

지적공부 확정 시행 공고

임피면 금강2지구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 사업이 완료되어 지적공부가 새로이 확정되었기에 지적사무 처리규정 제2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적공부가 확정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1. 사업명

○. 임피면 금강2지구 영만3공구 경지재정리 사업

2. 공고기간 : 2009. 7. 24 ~ 2009. 7. 30(7일간)

3. 토지소재지

○. 임피면 영창리1318-1번지 외429필지 (1,310,310㎡)

2009년 7월 23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1384호

재결 신청서 열람 공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고척천 상류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접수되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1항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 널리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 의뢰가 있어 같은법 시행령제 15조 2항 및 3항에 의하여 공고 합니다.

1. 수용 물건 :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12번지 등 총16필지
2. 토지소유자 : 군산시 수송동 892-2 수송아이파크 104-1203 고옥현 등 13명
3.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4. 사업 명 : 하천사업(고척천 상류 개수공사)
5. 열람 기간 : 2009. 7. 30 - 2009. 8. 17
6.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군산시청 재난관리과 (063-450-4494)
7. 공고 내용

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하천사업(고척천 상류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신청 접수 되어,

나) 수용재결신청에 대한 의견은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재결 신청서 및 수용신청 토지조서 각 1부.

2009. 7. 30

군 산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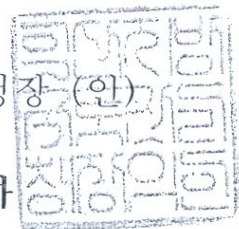
재 결 신 청 서

신청인 (사업시행자)	성명 또는 명칭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김돈수
	주 소	전북 익산시 남중동 352번지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만경강수계치수사업 고척제상류 개수공사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하천정비시행계획 [익산청 고시 제2005-51호 : 2005. 4. 8] - 토지세목고시 [익산청 고시 제2009-153호 2009. 4. 1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표시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24-12번지 총 16필지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의 표시		없음
보상액 및 그 내역		금 91,328,850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의 방법	해당 없음
	사용의 기간	해당 없음
토지소유자	성명 또는 명칭	고옥현 등 13명
	주 소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파크 104-1203
관계인	성명 또는 명칭	대야단위농업협동조합 등 5명
	주 소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등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2009.
재결신청의 청구	청구일	해당 없음
	청구인의 성명 또는 명칭	해당 없음
	청구인의 주소	해당 없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제3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2009년 6월 일
신청인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구 비 서 류

1. 토지조서 또는 물건조서 각 1부.
2. 협의경위서 각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사업예정지 및 사업계획을 표시한 도면 각 1부
5. 채권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 해당함을 증명하고 채권으로 보상하는 보상금의 금액, 채권원금의 상환방안, 채권의 이율과 이자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을 기재한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사서 (토 지)

공사업 : 고척제상류 개수공사

연번	수용토지의표시			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단가/금액	성명	주소	관리종류	성명	주소
1	군산 대야 산월	24-12	답	2,375	18,000 42,750,000	고옥현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파크 104-1203			
2	군산 대야 산월	24-14	답	13	14,050 182,650	고옥현	군산시 수송동 829-2 수송아이파크 104-1203			
3	군산 임피 미원	915-2	답	2	13,850 27,700	고택근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85-15			
4	군산 임피 미원	997-1	답	13	13,850 180,050	김남수	(동)목구군 임피면 미원리 185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185			
5	군산 대야 죽산	389-45	답	886	13,500 11,961,000	김선경	(동)목구군 대야면 신월리 6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6 중산마을 1005-101	근저당	대야단위농업 협동조합	(동)목구군 대야면 지경리 726-1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6	군산 대야 죽산	389-46	답	1,347	13,500 18,184,500	김선경	(동)목구군 대야면 신월리 629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6 중산마을 1005-101	근저당	대야단위농업 협동조합	(동)목구군 대야면 지경리 726-16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 773
7	군산 대야 죽산	923-1	답	104	13,500 1,404,000	김선경	(동)서산시 노원구 중계동 423-24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566 중산마을 1005-101			
8	군산 대야 산월	25-13	답	281	14,050 3,948,050	김일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 960-1 엘지아파트 103-902	근저당	주식회사 전북은행 (군산지점)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9	군산 대야 산월	26-6	답	299	14,500 4,335,500	두효근	익산시 신동 620-3 동북아파트 다동 305			
10	군산 대야 산월	26-7	답	256	14,500 3,712,000	백낙철	군산시 구암동 59-2			

사업시행자 제시액조서 (토 지)

공사명 : 고척제상류 개수공사

연번	수용토지의표시				시행자제시액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단가/금액	성명	주소	권리종류	성명	주소	
			공부	실제							면적(㎡)
11	군산 대야 보덕	176-3	도	도	12,500 25,000	이대유	군산시 임피면 영창리				
12	군산 대야 보덕	935-1	답	답	14,150 42,450	이명숙	군산시 성산면 신곡리 69-1	가입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인무수탁기관 동군산농업협동 조합성산지점)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1가75	
								가입류	동군산농업협동조합	군산시 임피면 음내리 223-5	
								근저당	동군산농업협동조합 (성산지점)	군산시 임피면 음내리 223-5	
13	군산 대야 보덕	171-2	도	도	12,500 3,925,000	이봉식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142				
14	군산 임피 미원	966-1	답	답	13,850 152,350	이희중	군산시 조촌동 903-2 현대아파트 105-1504				
15	군산 임피 보석	762-13	답	답	13,850 41,550	조명원	익산시 영동동 714-1 영동신원아파트 105-403				
16	군산 임피 미원	1014-1	답	답	13,850 457,050	함인식	군산시 삼학동 787				
	합 계				91,328,850						

군산시 공고 제2009-1385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후,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처분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09. 7. 28 ~ 2009. 8. 11일까지(15일간)

■. 공고내용

업종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행정처분	비고
청소년 게임제공업	올림피스	소룡동 1545-3	전홍철	도박 및 사행행위	등록취소 (2009.07.23)	
PC방	빅게임 PC방	소룡동 1563	박성희	도박 및 사행행위	등록취소 (2009.07.23)	

■. 문의처

- 담당부서 : 군산시청 환경위생과
- 연락처 : 063)450-4321, 팩스 063)452-8165

2009년 7월 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공고 제2009 - 1370호

공 고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고 제정하는 것임.

2. 제정법규명

○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3. 주요내용

○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안 제3조)

- 다른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계약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수 있고,
 -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 구매와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 지역 민간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 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음.

- 건설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안 제10조)

4.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18일 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도시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
- 의견 제출할 곳
 - 우) 573-730 군산시 시청로 8번지 군산시청 도시계획과
(전화:450-4432, FAX:452-8171)
-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컴퓨터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도시계획과 도시행정담당(450-4432)부서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정안 : 별 첨

군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산시 건설산업의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군산시(이하 “시” 라 한다)지역 안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부실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 계약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등록기준의 적합여부, 하도급의 적정여부, 성실 설계와 시공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건설산업체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 생산 자재 및 지역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3. 다른 지역업체와의 공동계약 참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전까지 조사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건설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6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지역건설산업의 발전과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군산 시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있는 지역업체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
3. 부실 설계 및 부실 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소속 건설산업 및 계약 관련 분야에 재직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 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건설교통국 건설업등록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군산시 공고 제2009-1382호

공 고

군산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활동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을 개선하고
 나. 주차장법(2009.01.07), 주택법(2009.02.03) 개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및 **“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에서 관리수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개선(안 제6조)
 ▶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적 조례 개선 통보(2009.06.19)
 나. 단지조성사업의 노외주차장 설치기준 신설 (안 제11조)
 ▶ 「주차장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2009.01.07)
 다.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변경(안 제13조의2, 별표4)
 ▶ 도시형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위임(2009.04.21)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19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703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전화 : 450-4365, FAX : 450-6404)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 장종철(전화 450-436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6조제2항 단서 중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도시재개발사업
5. 산업단지개발사업
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7. 도시개발사업

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text{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times \text{철도연장(km)} / 8$$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할 금액	납부방법
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	공개경쟁입찰	주차수입금전액	시장이 정하는 방법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르고 부설주차장 설치는 자주식으로 한다.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10.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1.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 3. 기타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4.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 5.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설치목적과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 <p>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시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단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수탁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전액 시에 납입하고 관리수탁자에게는 별표 8의 관리위탁수수료를 지급하며, 매월 지급하는 위탁수수료는 2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p>	<p>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시장이 공영주차장 관리를 법 제8조제2항과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2. 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 목적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p>②.....제2호에따른.....</p>
<p>제11조 <삭제 98.11.26></p>	<p>제11조(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택지개발사업 2. 주택지조성사업 3. 아파트지구개발사업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삭제 98.11.26>	<p>4. 도시재개발사업</p> <p>5. 산업단지개발사업</p> <p>6.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건설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p> <p>7. 도시개발사업</p> <p>②법 제1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받은 개선필요사항 등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빼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p> <p>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주차 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p> $\text{철도개설 5년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 / 210 \times \text{철도연장(km)} / 8$ <p>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p> <p>③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의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당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으로 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별표 2]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납부금액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금액	납부방법
<u>관리수탁자가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인 경우</u>	<u>시장이 정하는 방법</u>	<u>시장이 정하는 금액</u>	<u>시장이 정하는 방법</u>	<u>1. 제6조제1항제1호의 경우</u>	<u>공개경쟁입찰</u>	<u>입찰가격</u>	<u>3개월 단위로 선납</u>
<u>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민자율조직</u>	<u>수의계약</u>	<u>주차수입금 전액</u>	<u>시장이 정하는 방법</u>				
<u>재래시장활성화 등 주차장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단체</u>	<u>수의계약</u>	<u>주차수입금 전액</u>	<u>시장이 정하는 방법</u>	<u>2. 제6조제1항제2호의 경우</u>	<u>공개경쟁입찰</u>	<u>주차수입금 전액</u>	<u>시장이 정하는 방법</u>
<u>기타의 경우</u>	<u>경쟁계약</u>	<u>입찰가격</u>	<u>3개월단위로 선납</u>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80㎡ 당 1대 (시설면적 / 8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단, 예식장. 장례식장은 75㎡당 1대 (시설면적/75㎡)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 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시설면적 120㎡당 1대(시설면적/120㎡)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160㎡당 1대 (시설면적/160㎡) 건축연면적 1,000㎡미만인 경우에는 200㎡당 1대 (시설면적/200㎡)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75㎡초과 150㎡이하는 1대, 시설면적 150㎡초과의 경우는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 + \{(시설면적 - 150㎡) / 100㎡\}]$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 신 설 >	
7.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 1홀장 10대(홀의 수 x 10) 골프연습장 1타석당 1.5대 (타석의 수 x 1.5)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정원/15인) 관람장 정원 100인당 1대(정원/100인)
8.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9. 창고시설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10. 기타 건축물	시설면적 250㎡당 1대(시설면적/250㎡)

신·구조문 대비표

개 정 안

〔별표 4〕 부설주차장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3조의2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1. 위락시설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전시장, 동·식물원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 라목 내지 사목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업무시설, 종교시설, 장례식장
3.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전시장, 동·식물원, 여객자동차 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철도역사, 공항 시설,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숙박시설
4.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단독주택(다세대주택을 제외한다)
6. 다가주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업무시설중 오피스텔
7. 도시형 생활주택(주택법시행령 제3조제1항 원룸형 주택, 기숙사형 주택)	원룸형 주택 : 세대당 0.5대 기숙사형 주택 : 세대당 0.3대
8.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9.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공장은 제외), 발전시설
10. 창고시설
11. 기타 건축물

군산시 공고 제2009-1387호

공 고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군산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30일

군 산 시 장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2007.9.28일부터 종전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관련법에 맞게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눔(안 제3조제1항)
- 나. 일부제한지역내 축종별 가축사육의 거리를 정함 (안 제3조제2항)
- 다. 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과 축사의 신축 등 제한함(안 제4조제1항)
- 라. 가축종류별 제한에대한 예외를 정함(안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09년 8월 20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참조 : 농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이유)
-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573-150 군산시 시청로 8(조촌동 888)

군산시청 농정과(전화 450-4392, 팩스 450-8167, 전자우편 wonki39@korea.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농정과 가축위생담당 (전화 450-4392)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부개정조례안 : 별첨

※ 규제영향분석서 : 별첨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한다.

제명 “군산시가축사육제한조례”를 “군산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라고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시민생활환경 청결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이 조례의 “가축”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돼지·말·닭·젓소·오리·양·사슴 및 개를 말한다.
2. “가축사육”(이하 “사육”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사육 제한지역”(이하 “제한지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제한지역) ①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을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제한지역의 추가지정 및 폐지 시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한지역은 별표1과 같다.

제4조(가축사육 등 제한)

①제한지역 안에서는 사육 과 축사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재축 등을 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
2. 관상, 방범 및 취미를 목적으로 가축 5두미만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3.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기동물보호시설·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 등록 업체
4.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농경용 및 농가의 부업을 목적으로 가축 5마리미만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5.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기존의 축사를 부지면적 증가없이 개축·재축하는 경우

제5조(단속 및 처분)①시장은 가축사육 시설의 축산폐수로 시민생활환경 보전에 위해를 끼치는 자를 단속하여야 한다.

②사육지의 주변연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법제8조제2항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다만 신축 및 증축은 금지한다.

【별표1】

가 축 사 육 제 한 지 역

(제3조제2항)

구 분	전부제한지역	일부제한지역
대 상 지 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계획지역 내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공원구역·공원보호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부제한 지역 외 지역으로, 인근주택 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대지 경계 선에서 가장 가까운 직선거리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 300미터 이내 - 닭·오리·개·양·시슴 200미터 이내 - 소·젖소·말 : 100미터 이내

규제영향분석서

I.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 명	군산시 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별표1】 가축사육 제한지역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기한 연 장
3. 소관부서명 및 작성자인적사항	향만경제국장 이종홍 농 정 과 장 이주태						
4. 근거법령명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련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 방법	○ 규제의 구분 : 비중요규제 ○ 분석방법 ① 연 간 비 용 : 없 음 ② 피 규 제 자 수 : 군산시민 ③ 경쟁제한적 요소 : 없 음 ④ 국 제 기 준 : 해당없음						
6. 종전규제 및 신설 (변경) 규제의 내용	○ 종전 :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하며, 농업지역은 예외로 할 수 있다. ○ 변경 : 가축사육제한지역은 전부제한지역과 일부제한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 - 전부제한지역: 상업지역·주거지역·준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 공원(보호)구역 - 일부제한지역: 인근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돼지 300미터 닭·오리·개·양·사슴은 200미터, 소·젓소·말 100미터 이내						

II.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 시민의 주거경관과 주변 냄새로 인한 쾌적한 삶의 영위를 위한 필요성 제기 및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이루기 위한 필요성대두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 주거지역내 무분별한 가축사육을 제한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정주여건 강화
- 가축사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 및 수질 등 환경오염 방지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 규제외 대체수단 : 없 음
- 기존규제와의 관계 : 없 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 해당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해당없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축산농가의 반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쾌적한 주변 도시환경 정착을 이루기 위한 공감대 형성으로 해결